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4일, 정성국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성국의원)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평생 교육시설이나 장학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평생학습 활성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장학금 수혜자 수 확대를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와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평생교육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경감 연장(개정안 제43조제3항)

개정안은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제3항의 감면대상은 「평생교육법」 제28조1)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²⁾ 등이 있음.

개정안을 통해 평생교육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평생교육단체가 안정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직업능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IV)의원안, 정성국의원안에 따라

1)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2)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평생교육단체가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또는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최근 5년간 평생교육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이 없어 이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시, 적용기한이 3년 또는 5년 연장되더라도 예상되는 세수효과가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계되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3)에 따라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됨.

(2)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개정안 제44조제1항)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교 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있음.

평생교육시설은 2023년 기준 4,663개 기관이 약 1,757만명의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20만개를 제공하고 있음.

- 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안을 통해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평생교육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많은 국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으며 문화적 측면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14억원(연평균 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3) 전공대학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면제 연장(개정안 제44조제2항)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전공대학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2항의 감면대상이 되는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여 운영되는 것임.

전공대학이 평생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와 평생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면허에 대

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을 감면함으로써 전공대학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 4월 기준 전공대학은 3곳이 설치되어 있고, 3곳의 전공대학에서 21,140명의 재학생이 학습을 하고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성국의원안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31.5억원(연평균 1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됨.

(4) 학술단체에 대한 감면 연장(개정안 제45조제1항)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의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학술단체는 학술 연구의 촉진과 발전을 목적으로 조직된 학자, 연구자 및 후원자의 단체로서 각종 학회나 연구집단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학회, 대학부

설연구소 및 일반기관 등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총칭함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10,532개의 학술단체(학회, 대학부설연구소 및 일반기관)이 있음. 이 중 2,640개(25%)가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음.

학술단체의 사업에는 연구 진행,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자료 수집 및 국제학술교류 등이 있음.

개정안을 통해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학술단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술연구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학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마.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바. 대학·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성국의원안에 따라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22억원(연평균 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5)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개정안 제45조제2항)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의 감면대상인 장학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이면서, 학생 등의 장학 목적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⁵⁾.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의 장학법인은 49개가 있고, 시·도 교육감 소관의 장학법인은 2,919개임.

장학법인은 기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장학법인의 부동산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지급될 장학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5)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2022년판) 646면, 삼일인포마인, 2022

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장학법인이 안정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장학사업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장학법인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336억원(연평균 112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